

(사) 대한민국 항공보안협회 정 관



사단
법인 **대한민국항공보안협회**
Korea Aviation Security Association



(사단법인) 대한민국 항공보안협회 정관 (大韓民國 航空保安協會 定款)

제 정 2015. 7. 03

1차 개정 2016. 1. 19

2차 개정 2025. 7. 03

제 1 장 총 칙

제1조 (명칭) 본 협회의 명칭은 사단법인 대한민국 항공보안협회(大韓民國 航空保安協會, 이하 “협회”라 한다) 라고 하며, 영문으로 Korea Aviation Security Association(약어로 “KASA”라 한다) 라고 한다.

제2조 (목적) 본 협회는 항공보안 전문가 및 현장 종사자들의 역량과 경험을 바탕으로 항공보안에 관한 제도·기준·기술을 연구·개발하고, 항공보안 수준관리 및 실무운영 개선향상을 지원하며, 관련자료 수집·공유함으로써 항공교통 안전과 항공보안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소재지) 본 협회의 주 사무소는 “서울특별시 강서구 방화대로 21길 72, 범천빌딩 6층” 에 두며, 필요에 따라 지역사무소를 둘 수 있다.

(개정 2021. 5.18) (개정 2024.5.8.)

제4조 (주요사업) 본 협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비영리법인의 설립취지에 부합하는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항공보안 관련법규, 제 규정 등의 제·개정에 관한 연구 및 지원협력
2. 국가 항공보안정책 및 중장기 추진방향에 관한 지원협력
3. 항공보안 수준관리, 사고예방 및 점검 등의 지원협력사업
4. 국제 및 국내 항공보안 관련기관과의 정보교류 등 지원협력사업
5. 항공보안 전문 인력의 양성, 교육 및 훈련 등에 관한 지원 사업

6. 항공보안관련 세미나•워크숍 개최 및 회보•교재 등 발간사업
7. 항공보안장비•시스템 연구 및 현장 적용가능성 검토 등 지원사업
8. 회원 간 상호협력 및 권익증진, 정보공유 등 지원사업
9. 기타 항공보안 발전을 위한 제반활동 및 지원사업
10. 기타 보안 관련 연구 및 역량강화 지원사업 등(개정 2025.7.3.)

제 2 장 회 원

제5조 (회원의 구분 및 자격) 본 협회는 개인회원, 법인회원 및 특별회원을 두되 그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소정의 가입절차를 마친 자로 한다.

1. 개인회원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로서 항공보안 종사자 또는 항공보안에 관심이 있는 자로서 회비를 납부한 자
2. 법인회원 : 대한민국 사업자 등록을 받은 법인으로서 항공보안 관련업종 또는 항공보안에 관심이 있는 법인으로서 회비를 납부한 법인
3. 특별회원 : 항공보안종사자 또는 항공보안에 관심이 있고 협회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자로서 이사회에서 승인한 자

제6조 (회원의 권리와 의무) 회원의 권리와 의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회원은 총회에서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가지며, 정관(내규 포함) 및 총회 또는 이사회에서 의결한 회원의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2. 개인회원은 소정의 회비를 납부하고 협회에서 승인하는 경우에 정회원 자격이 부여되며, 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3. 법인회원은 협회에서 승인하고 소정의 회비납부 또는 이에 상당하는 현물을 제공하는 경우에 법인회원 자격이 부여되며, 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4. 특별회원은 이사회의 추천을 통해 특별회원 자격이 부여되고 자유의사에 따라 찬조금을 납부할 수 있으며, 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

할 수 있다.

5. 회원은 협회에서 발행하는 회보 또는 간행물을 제공받을 수 있으며, 협회 홈페이지를 이용할 수 있다.
6. 회원은 총회 또는 협회주관 각종 회의록과 이사회 의사록을 열람할 수 있다.

제7조 (입회) ① 본 협회에 가입하고자 하는 개인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입회신청서 제출(온라인 신청포함) 및 소정의 회비를 납입하여야 하며, 협회의 승인절차를 거쳐 정회원으로 확정한다.

② 협회에 가입하고자 하는 법인은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입회신청서와 소정의 회비 또는 이에 상당하는 현물을 납입하여야 하며, 협회의 승인절차를 거쳐 법인회원으로 확정한다.

③ 회원에 대한 회비와 관련한 사항은 이사회에서 별도로 정한다.

제8조 (탈퇴 및 제명) ① 회원의 탈퇴는 자유의사에 의하며, 탈퇴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협회에 제출함으로써 탈퇴할 수 있다.

② 회원이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로 제명할 수 있으며 당사자에게 제명사실을 "문서 또는 서면(팩스, 이메일, SMS 등 전자문서 포함)"(이하 "서면"이라 한다)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1. 제6조에서 정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2. 협회의 명예를 훼손시켰을 경우

③ 회원이 제7조에서 정한 회비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 납부기한 경과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면 자동으로 제명된 것으로 본다.

제 3 장 임 원

제9조 (임원의 범위 및 조직구성) ① 본 협회는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1. 회장 1인
2. 부회장 2인

3. 감사 2인
 4. 사무총장 1인
 5. 이사 6인 이상 12인 이하(회장, 부회장, 사무총장을 포함)
- ② 임원의 상근 및 비상근 근무방법 등은 제31조의 운영규정에서 별도로 정한다. (개정 2021. 5.18)

제10조 (임원 등의 선임) ① 본 협회의 임원(회장, 부회장, 감사, 사무총장, 이사)은 회원 추천에 따라 총회에서 선출한다.

② 회장은 이사 중에서 기획이사, 재무이사, 사업이사, 대외협력이사, 교육이사 각 1인을 위촉한다.

③ 본 협회는 항공보안 전문분야 별로 분과위원회를 이사회 의결을 통해 둘 수 있으며, 분과위원장은 회장이 선임한다.

제11조 (임원의 임기) 본 협회 임원 등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회장은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개정 2025.7.3.)

제12조 (보선) 본 협회 임원의 결위시에는 회장의 추천에 따라 이사회에서 보선하고 차기 총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제13조 (임원의 임무) ① 회장은 협회를 대표하고 총회 및 이사회 의장이 된다.

② 부회장은 협회활동 전반에 대해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하며 서열은 회장이 정한다.

③ 감사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인의 재산 상황 및 업무 감사
2. 이사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감사
3. 제1호 내지 제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을 때에는 이사회 및 총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고 주무관청에 보고하는 일
4. 제3호의 시정 요구 및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총회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5. 법인의 재산상황과 업무에 관하여 이사회 및 총회 또는 회장에 의견을 진술하는 일

- ④ 사무총장은 회장과 부회장을 보좌하고 협회활동 전반에 대한 운영업무를 총괄하고 사무국 운영을 책임진다.
- ⑤ 이사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이사별로 1명 이상의 국장을 둘 수 있다.

- 1. 기획이사 : 협회 제반활동에 관한 기획사무를 담당하며 이사회 의장을 보좌하고 총회 및 이사회 간사역할을 수행한다.
- 2. 재무이사 : 협회 제반활동에 관한 재무사무를 담당한다.
- 3. 사업이사 : 협회의 사업에 관한 사무를 담당한다.
- 4. 대외협력이사 : 협회의 대외협력에 관한 사무를 담당한다.
- 5. 교육이사 : 협회의 교육훈련에 관한 사무를 담당한다.

- ⑥ 분과위원장은 1명 이상의 총무를 둘 수 있으며 임기는 2년으로 하되, 궐위시 후임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 ⑦ 임원(회장, 부회장, 사무총장, 이사)은 이사회에 출석하여 협회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 결정한다.

제14조 (고문 및 자문위원) ① 회장은 이사회 의결을 통해 고문 또는 자문위원을 50인 이내에서 위촉할 수 있다.

- ② 회장은 제1호에서 정한 범위내에서 법인회원 대표이사 또는 대표이사가 추천하는 1인을 이사회 의결을 통해 자문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 ③ 고문 및 자문위원은 본 협회의 발전, 전문성 향상, 주요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회장 또는 이사회의 자문에 응한다.

제 4 장 협 회 운 영

제15조 (협회운영) ① 회장은 협회 운영에 필요한 행정업무, 목표사업 수행 등 협회 운영을 위하여 임원, 고문, 자문위원 등으로 집행부를 구성할 수 있다.

- ② 집행부의 상근활동 여부는 개인의 자유의사를 존중하며 무보수를

원칙으로 하되, 이사회의 의결을 통해 필요시 활동비 또는 업무 수행에 따른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 ③ 활동비, 업무수행에 따른 실비 등의 지급 범위와 금액은 이사회에서 별도로 정한다.
- ④ 회장은 원활한 협회운영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에 집행부가 참여하는 집행간부회의를 개최할 수 있으며 세부운영방안은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 5 장 총 회

제16조 (총회의 구성 등) ① 총회는 본 협회의 최고 의결기관이며, 개인회원, 법인회원 및 특별회원으로 구성한다.

- ②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여 회장이 소집한다.
- ③ 정기총회는 매년 11월 또는 12월중에 회장이 소집하며, 총회 개최일로부터 7일전까지 일시, 장소, 안건 등을 회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 ④ 임시총회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회장이 소집하여야 한다.
 - 1. 회장이 필요하다고 요청할 경우
 - 2. 이사회 의결이 있을 경우
 - 3. 재적 개인회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 4. 제13조 제4항 제4호에 의거하여 감사의 요구가 있을 경우

제17조 (총회의 의결사항) 총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결정한다.

- 1. 정관의 중요한 개정사항
- 2. 임원(회장, 부회장, 감사, 사무총장)의 선임 및 해임
- 3. 예산, 결산, 연간 사업계획의 승인
- 4. 감사보고서의 승인 및 협회의 해산
- 5. 회장 또는 이사회가 부의한 사항에 대한 의결

- 6. 정관의 경미한 개정사항
- 7. 협회 운영과 관련한 중요한 사항

제18조 (총회의 의결방법) ① 총회는 재적회원(개인회원, 법인회원, 특별회원을 포함) 5분의 1이상의 참석으로 성립한다.

② 출석에 관하여 총회 개시 전까지 위임장 또는 서면으로 의장에게 제출한 경우에는 출석한 것으로 한다.

③ 회장은 총회에 부의할 모든 회의 안건에 대하여 미리 이사회회의 의결을 얻어야 하며, 그 내용을 명시하며 7일 전까지 각 회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기타 불필요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구두 또는 서면으로 통지할 수 있다.

④ 특별한 사유로 총회를 개최할 수 없어 임원을 선임할 수 없을 때에는 전임자가 후임자 선임 시 까지 그 직무를 계속 수행한다.

⑤ 총회의 의결에 필요한 총회의 소집 정족수 및 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7조 제1호 결의에는 출석회원 3분의 2 이상(서면으로 위임한 회원 포함) 찬성과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2. 제17조 제2호 회장 해임 결의에는 출석회원 3분의 2 이상(서면으로 위임한 회원 포함)의 찬성이 있어야 하며, 주무관청에 지체없이 신고하여야 한다.
3. 제5항 제1호 내지 제2호를 제외하고 제17조에서 정한 총회의 모든 의결사항은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서면으로 위임한 회원 포함)으로 정한다.

제19조 (의사록) 총회 의장은 의사록을 작성하고 이를 차기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 6 장 이 사 회

제20조 (이사회 의 구성) ① 이사회는 회장, 부회장, 감사, 사무총장, 이사로 구성하고 회장이 의장이 된다.

② 회장 유고시에는 부회장, 사무총장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이사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별도의 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21조 (이사회 의 소집) 이사회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가 있으며, 정기회의는 매년 1월, 6월, 11월에 소집하고 임시회의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 이사회 개최일로부터 7일전까지 일시, 장소, 안건 등을 서면으로 통지하며 회장이 소집한다.

제22조 (이사회 의 의결사항)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사업계획 및 협회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
2. 중요업무 집행 및 임원 선임에 관한 사항
3. 예산, 결산, 특별회계, 사업계획의 승인
4.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5. 재산관리에 관한 사항
6. 총회에 부의할 안건의결 및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7. 정관 시행세칙 및 내규 등의 제·개정 승인
8. 정관의 규정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9. 기타 본회의 운영상 중요하다고 회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23조 (의결방법) ①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 동수일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한다.

② 예산, 결산 및 사업계획 승인 후 총회에서 추인이 거부될 경우에는 재심의를 통해 임시 총회에 상정하여 추인을 받아야 한다.

③ 제1항과 관련하여 경미한 사항이나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으며, 타 임원에게 회의 출석 대리권을 위임할 수 있다.

제24조 (의사록) 이사회의 심의, 결정된 사항에 대해 의사록을 작성하고

의장과 출석이사의 기명날인을 받아서 보관한다.

제 7 장 회계 및 재산

제25조 (수입 및 지출) ① 본 협회의 수입은 개인회비, 법인회비, 특별회비, 찬조금, 기부금, 각종 사업수입, 기타수입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기 납부한 모든 회비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③ 본 협회의 경비는 예산범위 내에서 사용한다.

제26조 (특별회계) 본 협회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사회 의 결을 거쳐 특별회계를 둘 수 있으며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27조 (회계 연도) ① 본 협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② 본 협회의 사업계획 및 세입·세출예산은 매 회계연도 개시 후 2개월 이내에 수립·편성하고, 당해 연도 사업실적 및 수지결산서를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작성하여 주무관청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8조 (재산) 협회 창립당시의 재산목록은 별지 제4호과 같다.

제 8 장 해산 및 청산

제29조 (해산) 본 협회를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 재적회원 4분의 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해산하고,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30조 (청산) ① 본 협회가 해산할 때에는 총회에서 대표청산인을 포함한 청산인을 5인 이내로 선출하여야 하며, 청산인은 재산을 처분·정리하고 그 결과를 회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② 잔여재산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본 협회와 유사한 단체에 기증할 수 있다.

제 9 장 보 칙

제31조 (운영규정의 제정) ① 본 협회의 효율적인 행정업무, 사무업무, 회계 업무, 인사업무 등의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협회내규 등을 제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② 협회는 제4조에서 정한 주요사업의 범위 내에서 목적사업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이사회에서 의결을 통해 협회 산하에 별도의 기구를 설치·운영한다.

③ 제2항과 관련하여 목적사업의 효율적인 운영 및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인사, 재정, 회계, 사업계획 등 제반업무를 협회와는 별도로 운영할 수 있으며 이사회에 운영현황을 보고하여야 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과 관련하여 이사회에서 정한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운영을 중단하여야 한다.(개정 2025.7.3.)

제32조 (정관의 개정) ① 정관의 개정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발의할 수 있다.

1. 재적회원 3분의 1 이상이 서명한 요구서가 있을 때
2. 이사회의 의결이 있을 때
3.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② 제1항의 따른 정관개정과 관련한 제반사항은 제5장(총회)에서 정한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33조 (시행세칙 등) ① 정관의 시행에 필요한 시행세칙은 이사회에서 정한다.

② 정관 또는 시행세칙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타 협회의 일반적인 사례와 사회통념에 의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정관은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16.1.19.)

제1조 (시행일) 이 개정정관의 시행일은 국토교통부장관의 정관변경허가가 있는 날(2016.1.19.)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5.7.3.)

제1조 (시행일) 이 개정정관의 시행일은 국토교통부장관의 정관변경허가가 있는 날(2025.7.3.)로부터 시행한다.